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452
----------	-------

발의연월일 : 2025. 8. 28.

발의자 : 박수민 · 김재섭 · 이인선
윤한홍 · 추경호 · 정연욱
서지영 · 김선교 · 윤상현
최형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시장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의 주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 첫째 주주 이익에 대한 충실의무 부재, 둘째 주주 간 이해관계 충돌 시 대주주를 제외한 주주의 이익이 공평하게 보호되지 않는 구조라는 것임.

이 중 첫 번째 문제는 최근 여야 합의로 처리된 상법 개정을 통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 대표적인 사례가 현행 배당 소득 과세제도임.

현행 「소득세법」 상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며, 연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되어 최대 49.5%의 최고세율이 적용됨. 특히 배당 여부와 배당률을 결정하는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배당을 통해 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세금으

로 부담하게 되므로 배당 유인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반면, 주식을 매각하여 얻는 양도소득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함. 이로 인해 대주주는 배당보다 주식 매각을 선호하게 되며, 이는 결국 일반 소수주주의 배당을 통한 투자수익 실현 기회를 제한하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하게 됨. 결과적으로 현행 배당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주주 간 이해상충을 심화시키고, 소수주주의 주주환원 권리의 제약하는 구조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상법 개정과 보조를 맞추어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통해 대주주의 배당유인을 높여 소수주주의 주주환원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합리적 조치를 마련코자 함.

구체적으로, 상장법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고, 대주주의 배당에 대한 유인을 강화해 기업의 수익을 주주와 공유하는 건전한 지배구조와 시장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제5호의2 신설 등).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5호까지”를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6호까지”를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로 한다.

5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같은 법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그 밖에 수익을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회사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제129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14조제3항제5호의2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세율

1)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4

2)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20

3) 3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25

제155조의7제1항 중 “제2호나목”을 “제2호다목”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당소득의 분리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 ② (생 략)</p> <p>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p> <p>1. ~ 5. (생 략)</p> <p><u><신 설></u></p>	<p>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u>5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같은 법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선탁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그 밖에 수익을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회사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u></p>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신 설>

가. 나. (생 략)

3. ~ 8. (생략)

② ~ ⑧ (생 략)

제155조의7(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차등과세가 적용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이 아닌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

2. -----

가. 제14조 제3항 제5호의2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세율

1)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

00분의 14

2)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

하인 경우: 100분의 20

3) 3억원 초과인 경우: 100

분의 25

나. · 다. (현행 가목 및 나목
과 같음)

3. ~ 8.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55조의7(비실명자산소득에 대

한 원천징수 특례) ① -----

----- 제2호 다

목

수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실질 소유자가 제1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국세기본법」 제47조의 5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